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55호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사업을 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4조).

다. 대전광역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라. 대전광역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cmdjyo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 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 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단체
- 제3조(주민자치사업)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2.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 3. 주민자치 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

- 4. 주민자치 단체 간 교류사업
- 5. 주민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6.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이 나 주민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 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 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고
1	M 301 201	17 301 20L	
2	4 20 19	M	
3	145 No 82	min	
4	박 상숙	m	
5	of 21	got,	
6	かちゃろ	26)	
7	1 76 4	Ha	
8	3 9131	ale .	
9		7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